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피권고 또는 대피명령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제공〉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85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4.
3. 회부연월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Ⅲ. 검토의견

한정애의원안은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통해 대피권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현행	한정애의원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⑥ (생략)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권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 ----- ----- ----- ----- ----- ----- -----.

현행	한정애의원안
⑨·⑩ (생략)	⑩·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⑪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⑫ ----- ----- ----- -제8항과 제9항을-----.
⑫ (생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 등에 문자·음성송신이나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 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또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러나 이러한 재난문자 등에는 재난의 유형, 규모, 발생 지역 및 시기 등의 정보가 제공될 뿐 구체적인 대피장소에 관한 안내는 제공되지 않아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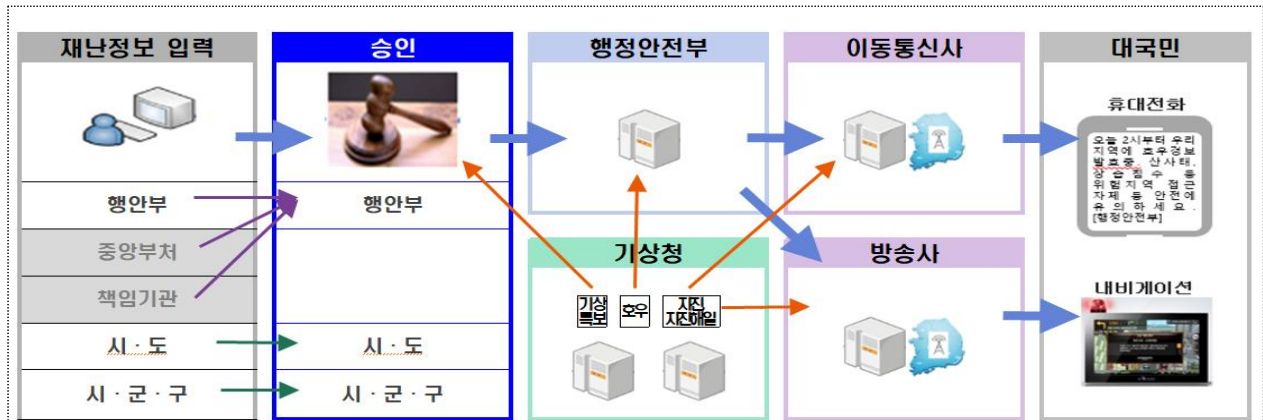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찾지 못해 대피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재난문자·방송 송출 체계도>



이에 개정안은 재난문자 등을 통한 예보·경보·통지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상황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 및 반려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난문자를 통한 예보·경보·통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 개개인의 위치에 맞는 지역별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피장소의 안내 방식으로 재난문자가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등을 통한 예보·경보·통지 시 국민이 어느 위치에서 수신 또는 인지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현행 재난문자의 글자 수는 최대 90자로 제공되고 있어 이러한 한계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의 정보까지 추가될 경우 다른 재난정보의 축약 또는 삭제로 이어져 충분한 재난정보 전달에 지장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재해구호법」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만으로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349